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사유

- 현 구청사가 협소하고 시설 노후로 구민불편이 가중되어 확장 신축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 되었으나 청사건립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예산의 일부를 연차적으로 적립함으로써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2003년도부터 매년 20억원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안 제3조 제1항)
- 기금의 운용 관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안 제5조 제1항)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안 제6조)
- 회계관계 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총무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총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안 제8조 제1항)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

4. 검토의견

- 이번 조례 제정안은 우리구 현 청사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검토되어 왔으나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재원부족등으로 그동안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사무실 부족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 이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대구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는 신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번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함.

2002. 12.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 삼 립